

재외동포청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재외동포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재외동포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 선발단위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101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 ~ 2년 |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 선발단위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
| 101 | 법률 검토 및 동포지원제도 운영·개선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공증법 및 하위법령(지침 포함) 개정, 재외 공관 공증제도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부서 업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지원○ 부서 업무 관련 법령 검토 및 해석, 법률 자문, 국회 대응, 관련 지침·편람 검토·개정, 부서 소관 법령과 타 법령과의 연계방안 검토 등 제도 개선○ 부서 업무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청문·행정 처분 등 지원○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개별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9.29) 기준]

|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
|------|--------|------------------------------------------|
| 101 | 자격증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변호사 자격증)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9.29)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하고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시 합격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 일정 | 9.8.(월) ~ 9.19.(금) | 9.15.(월) ~ 9.19.(금), 18:00 | 9.24.(수) | 9.29.(월) | 10.24.(금) |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외동포청 누리집·나라일터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재 예정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나라일터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9. 15.(월) 09:00 ~ 9. 19.(금)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한 전자접수
 - 붙임3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붙임의 제출서류들을 서명 후 스캔하여 각자의 파일별 제출
 - ※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안 내 사 항 》

○ 응시 수수료 : (5급) 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9.15.(월) 09시~9.24.(수) 18시까지 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 접수 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 구분 | 서류 | 비고 |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
|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
|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 |
| |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 이상 졸업시 석·박사 각각 제출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요약서 1부 - 석·박사 이상 졸업시, 각각 작성 | 별지서식 제6호 |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전체 기재) 1부 |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만 해당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및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 구 분 |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
|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임기제 5호 | 90,629천원 | 51,513천원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032-585-3239)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 선발단위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101 | 법률 검토 및 동포지원제도 운영.개선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
|-------|------------------------------------------------------------------------------------------------------------------------------------------------------------------------------------------------------------------------------------------------------------------------------------------------------------------------------|
| 주요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공증법 및 하위법령(지침 포함) 개정, 재외공관 공증제도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 부서 업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지원 ○ 부서 업무 관련 법령 검토 및 해석, 법률 자문, 국회 대응, 관련 지침.편람 검토.개정, 부서 소관 법령과 타 법령과의 연계방안 검토 등 제도 개선 ○ 부서 업무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청문.행정처분 등 지원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
|-------|------------------------------------------------------------------------------------------------------------------------------------------------------------------------------------------------------------------------------------------------------------------------------------------------------------------------------|

| | |
|-------|---------------------------------------------------------------------------------------------------------------------------------------------------------------------|
| 필요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기획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
|-------|---------------------------------------------------------------------------------------------------------------------------------------------------------------------|

| | |
|-------|---------------------------------------------------------------------------------------------------------------------------------------------------------------------------------------------------------------------|
| 필요 지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해석 및 그에 따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 법률 쟁점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중재.조정 능력 ○ 소관 법제 정비 및 소관 법령 해석 등 업무에 필요한 이론적.법률적 지식 ○ 법률.학설.판례의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 |
|-------|---------------------------------------------------------------------------------------------------------------------------------------------------------------------------------------------------------------------|

| | | | |
|----------|-------|-----|---------------------------------------------------------------------|
| 응시 자격 요건 | 응시 요건 | 자격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
| | | | |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 구 분 | 내 용 |
|---------------------------------------------------------------------------------|------------------------------------------------------------------------------------------------------------------------------------------------------------------------|
| 1.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 자필 서명 필수 |
| 2.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 A4 2매 이내로 작성 |
| 3.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 자필 서명 필수 |
|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 자필 서명 필수 |
| 6.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 변호사 시험 합격연도 및 시험회차 등 기재 |
|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 10.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성의 경우만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본으로 발급 |
| 1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제출 |

* 제출서류는 서류별로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해 제출(한개 파일로 스캔 금지)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란에 체크
- ④ 응시자격 : 해당사항 작성

□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사 자격증 기재(서식 1호)
 -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일인 2025. 9. 29.(월)까지 취득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 | | | |
|-----|--|-----------|--|
| 성 명 | | 응시직급 및 분야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 성명 | 응시직급 및 분야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재외동포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기관
- 제공 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재외동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 공무원 채용 관리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공무원 채용 관리 |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재외동포청장 귀하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성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
| 학위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제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명 :■ 영문명 :○ 심사 연월일 :○ 지도교수 : | |
| 주요내용 요약 | | |

I. 연구목적

-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참고

국가공무원 채용 포스터



Decide Now, Thrive Forever!

당신의 커리어 리셋,
지금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행복하시나요?
당신의 다음 커리어 스텝은
공직 임용직, 다채로운
확언하세요.



"일을 하는데 왜 허전하지?", "퇴근은 했는데 왜 마음은 퇴사를 의치지?",
"월급은 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나요?
지금 다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안정과 성장, 가치와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 공직에서
당신의 다음 커리어를 키워주세요.



1 나영비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공고 확인하기



공무원 채용 시험
알티오서연
공직의 매력
확인하기